

#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6. 12 (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7. 6. 20(수)
- 다. 상정일자 : 2007. 6. 21(목) 제13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6. 21)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가. 제안이유

-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52,219천원으로서  
이중 12건에 1,868,38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 2005년산 감자수매대금 군비부담금 96,000천원
  - 솔잎혹파리 긴급방제비 559,988천원
  - 7월수해피해긴급방역비(3개목) 39,300천원
  - 7월수해피해농기계수리(2개목) 11,148천원
  - 7월수해피해구호물자상하차인부임 6,468천원
  - 7월수해피해폐사축처리 6,800천원
  - 7월수해피해폐목긴급처리 12,720천원
  - 7월수해피해하수도응급복구 41,100천원
  - 7월수해피해침수가옥분뇨처리 5,808천원
  - 7월수해피해컨테이너집부대설치(2개목) 212,500천원
  - 7월수해피해응급복구비 791,763천원
  - 7월수해피해응급복구비 84,792천원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대부분의 사용처는 지난 2006년도 수해응급 복구를 위해 적의 사용하였으나,
- 2005년산 감자수매대금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명시한 예비비 사용 제한 항목에 보조금이 명시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없음에도 예비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조서 1부     끝.**

## 5. 예비비 지출

2006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52,219,000원으로서  
 솔잎혹파리긴급방제사업외 15건 1,868,38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868,387,000원을 지출하고 183,83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과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세항	세세항	목									
합계			16건	1,868,387,000	-	-		1,868,387,000			
유통특작	보조사업	402-02	2005년산 고령지 저장감자 수매대금 군비부담금	96,000,000				96,000,000	'06.05.04.		정부(농림부)의 2005년산 고령지 저장감자 수매대 금중 군비 부담금 지급
산림관리	보조사업	401-01	솔잎혹파리 긴급방제	559,988,000				559,988,000	'06.06.14.		솔잎혹파리피해가 군전역 으로 확대되어 소나무 고사가 우려되고 있어 긴급방제를 위해 지급
의약관리	인건비	101-10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방역 인부임	22,500,000				22,500,000	'06.07.20.		7.15.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방역

구분			사업명	지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과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세항	세세항	목									
의약관리	자체사업	206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8,800,000				8,800,000	'06.07.20.		7.15.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방역
의약관리	자체사업	307-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방역 비상예방 접종약품 구입	8,000,000				8,000,000	'06.07.20.		7.15.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방역
농촌지도	경상적 경비	201-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기계 응급수리 소모품비	1,548,000				1,548,000	'06.07.21.		7.15.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매물 농기계 응급수리 소모품구입
농촌지도	자체사업	206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기계 응급수리 재료비	9,600,000				9,600,000	'06.07.21.		7.15.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매물 농기계 응급수리 재료구입
재난관리	보조사업	302-02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구호물품 상·하차인부 임	6,468,000				6,468,000	'06.07.25.		7.15. 집중호우로 인한 구호물품 상·하차 인부임
축산행정	보조사업	201-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폐사축처리및액비처리 소모품 구입	6,800,000				6,800,000	'06.07.27.		7.15. 집중호우로 인한 폐사축처리 및 액비처리 소모품 구입
자원개발	보조사업	401-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주변 폐목 긴급제거	12,720,000				12,720,000	'06.07.30.		7.15.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주변 폐목 긴급제거
재난관리	보조사업	201-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응급복구	41,100,000				41,100,000	'06.07.30.		7.15.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응급복구 (간이하수도)

구분			사업명	지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과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세항	세세항	목									
재난관리	보조사업	201-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 분뇨수거비용	5,808,000				5,808,000	'06.08.01.		7.15.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 분뇨수거비용
주택관리	보조사업	401-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 이재민 컨테이너집 부대시설 설치	61,825,000				61,825,000	'06.08.11.		7.15.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 이재민 컨테이너집 부대시설설치
주택관리	보조사업	405-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 이재민 컨테이너집 부대시설 설치	150,675,000				150,675,000	'06.08.11.		7.15.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이재민 컨테이너집 등 구입
재난관리	보조사업	201-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791,763,000				791,763,000	'06.08.21.		7.15.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재난관리	보조사업	201-0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응급복구	84,792,000				84,792,000	'06.09.13.		7.15.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6. .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52,219천원으로서 이 중 12건에 1,868,38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 계(12건)	1,868,387천원
○ 2005년산 감자수매대금 군비부담금	96,000천원
○ 솔잎혹파리 긴급방제비	559,988천원
○ 7월수해피해긴급방역비(3개목)	39,300천원
○ 7월수해피해농기계수리(2개목)	11,148천원
○ 7월수해피해구호물자상하차인부임	6,468천원
○ 7월수해피해폐사축처리	6,800천원
○ 7월수해피해폐목긴급처리	12,720천원
○ 7월수해피해하수도응급복구	41,100천원
○ 7월수해피해침수가옥분뇨처리	5,808천원
○ 7월수해피해컨테이너집부대설치(2개목)	212,500천원
○ 7월수해피해응급복구비	791,763천원
○ 7월수해피해응급복구비	84,792천원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0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20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예비비사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